

등록번호	재무과-11240
등록일자	2016.5.29.
결재일자	2016.5.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출심사팀장	재무과장	경제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주형모	기민희	박성주	오남희	代김종두	05/30 문석진
협 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



서대문구
재무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

I 결산검사 개요

□ 큰 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 결산검사 개요

- 기 간 : 2016.4.25. ~ 5.24.(30일간)
- 장 소 : 구청 4층 제1회의실
- 위 원 : 3명
 - 대표위원 : 김순길(구의회 의원)
 - 위 원 : 장원석(전직공무원), 신현승(세무사)
- 검사항목 :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26종)
- 검사내용 : 계산의 과오 및 부합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 부합여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합당성 여부 등

II 결산 총괄현황

□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여금	잉여금내역			
					평시 이월	사고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423,032,621	429,654,710	353,782,992	75,871,718	15,984,282	10,842,055	3,800,260	45,245,121
일반회계	405,123,587	410,057,057	347,927,718	62,129,339	15,984,282	8,917,694	3,736,891	33,490,472
특별회계	17,909,034	19,597,653	5,855,274	13,742,379		1,924,361	63,369	11,754,649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1,795,632	2,005,761	213,200	1,792,561	0	0		1,792,561
의료급여기금	396,759	364,095	318,450	45,645	0	0	26,599	19,046
기반시설		576		576	0	0		576
주차장	15,716,643	17,227,222	53,236,244	11,903,597		1,924,361	36,770	9,942,466

※ 당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보조금 결산에서 제외했으나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요청이 있어 수정 반영
 ⇒ 반영 전 일반회계 사용잔액 3,736,699천원, 순세계잉여금 33,490,664천원 [구청장 방침 재무과-5727(2016.3.22.)]

□ 기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계	12,851,839	△109,569	4,124,818	4,234,387	12,742,270
중소기업육성기금	3,359,732	△532,022	1,418,608	1,950,630	2,827,71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262,474	3,992	29,976	25,984	1,266,466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566,462	△12,699	12,299	24,997	553,76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45,289	△14,854	13,238	28,093	530,435
성평등기금	1,167,932	△600	28,496	29,096	1,167,33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225,287	△654,932	62,548	717,480	570,355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471,292	471,502	210	471,292
육외광고정비기금	651,018	132,289	539,927	407,637	783,307
도로굴착복구기금	701,959	181,089	800,074	618,986	883,048
재난관리기금	2,368,680	287,634	627,429	339,795	2,656,314
식품진흥기금	1,003,006	29,242	120,721	91,479	1,032,248

□ 채권현재액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합계	10,935,167	4,119,968	3,663,051	11,392,083	1,203,964
일반회계	6,947,170	341,377	394,116	6,894,430	19,804
특별회계	496,100	404,300	496,825	403,575	124,375
기금	3,491,897	3,374,291	2,772,110	4,094,078	1,059,785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

(단위 : 개, m²,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량	면적	가 격	증			감			수 량	면적	가 격
				수량	면적	가 격	수량	면적	가 격			
합계	116,692	1,314,450	1,258,616,935	1,220	20,615	16,359,478	101	12,628	8,289,894	117,811	1,322,437	1,266,686,519
토지	4,276	1,188,347	1,109,013,622	174	19,887	13,038,872	100	12,628	8,278,335	4,350	1,195,606	1,113,774,159
건물	129	125,413	127,335,138	1	675	2,344,601	-	-	-	130	126,088	129,679,739
임목축	9,745	-	7,938,575	992	-	23,219	-	-	-	10,737	-	7,961,794
공작물	382	-	12,525,727	51	-	877,786	1	0	11,559	432	-	13,391,954
기계기구	1	-	5,760	-	-	-	-	-	-	1	-	5,760
무체재산	9	-	12,964	-	-	-	-	-	-	9	-	12,964
유가증권	102,144	-	940,449	-	-	-	-	-	-	102,144	-	940,449
용익물건	4	537	818,000	2	53	75,000	-	-	-	6	590	893,000
회원권	2	153	26,700	-	-	-	-	-	-	2	153	26,700

□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수량	금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032	6,862,874	96	497,454	22	238,238	1,106	7,122,090

Ⅲ 결산검사 결과 의견

□ 부서별 개선 및 권고사항 요약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부서
1	<p>○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검토 등 사전조사 미비 (의견서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6.6%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기 등을 사전에 고려치 않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 등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예산 전액이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음. -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물량,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후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요청 해주기 바람 	전 부서 정책기획담당관
2	<p>○ 입찰계약공사의 설계 변경 과다 (의견서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분야의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 1건당 설계변경 횟수가 상당히 많거나, 설계변경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짐. 이 경우 공사금액증감은 물론,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음. -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설계용역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토목과, 안전치수과, 설계변경이 있는 전 부서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부서
3	<p>○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최소화 (의견서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대부분으로 사업이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이미 의견제시를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사업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사고이월예산은 재이월이 불가하며, 사업기간연장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람. 	사고이월이 있는 전 부서
4	<p>○ 입찰계약공사의 계약체결 부적정 (의견서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공사로써 발주부서(토목과)에서 2015.2.9.과 2015.2.25. 2회에 걸쳐 제1구역과 제2구역으로 구분, 공사시기와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법령 위반임.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써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시기나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며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에 관련된 제반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토목과, 공사담당 전 부서
5	<p>○ 연간단가계약공사의 물량추계 철저 (의견서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단가계약공사는 물량증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사물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당초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있음. - 연간단가계약공사의 물량추계업무를 철저히 하고, 예산편성부서에서도 해당공사의 물량추계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정책기획담당관
6	<p>○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사업추진 실적부진 (의견서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사업비 주된 발생 사유는 보조금 등의 교부지연과 설계변경, 철거대상 건축물의 보상협의 지연, 기타 학사일정 관련 등으로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함. - 기확보된 예산사업은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요청하며 사업예산이 가급적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교육지원과 외 14개 부서 (이월사업발생부서)
7	<p>○ 사업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의견서 p.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전액이 불용된 경우로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사업계획변동 등으로 예산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여야 하나 불용처리함. - 사업예산의 불용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실시 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조치하여 예산집행과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도시관리과, 안전치수과, 의약과, 교통관리과, 정책기획담당관 등 전 부서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부서
8	<p>○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이에 대한 문제점 (의견서 p.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편성 요구시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시기, 물량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집행잔액도 더 많이 발생함. - 세출예산편성 요구시 사업의 시행 가능성, 시기, 사업물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전 부서, 정책기획담당관
9	<p>○ 각종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필요성 검토 (의견서 p.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용역은 사업계획상 공정이 많고, 공사규모와 공사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공사의 난이도 등이 높을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나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설계용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설계용역을 거쳐 발주한 사업도 설계변경 건수는 감소하지 않음. 또한 설계용역 소요기간 및 계약관련 사전절차로 시급한 공사를 적기에 발주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각종공사 발주부서는 설계용역이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최소화하고, 설계용역 시에도 기간을 단축하여 해당공사가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각종 공사가 있는 전 부서
10	<p>○ 세출예산의 예비비 집행(사용) 부적정 (의견서 p.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촌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시·구 매칭 구비 부담금과 기초연금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나,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의 예비비 사용제한(예비비의 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비로 이를 지출할 수 없음. - 세출예산의 예비비 집행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집행하기 바람. 	정책기획담당관, 전부서
11	<p>○ 세외수입(법규위반과태료등) 체납액 징수 철저 (의견서 p.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총액(41,264백만원, 특별회계 포함)이 구 전체 세입총액(429,655백만원)의 9.6%를 점유하고 있어 세출예산 재원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히 법규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함. -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합징수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보다 나은 징수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세무2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등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부서
12	<p>○ 노인사회활동지원 위탁사업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견서 p.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자락길 행복나눔이 외 7개 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참여대상으로 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이를 위탁운영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에서는 수탁기관의 업무담당직원 부족과 수탁업무과중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대상자에 대한 현지답사 확인 등이 어려워 부정수급 등 예상치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환수조치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위 8개 위탁사업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참여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참여인원 모집(선정)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수급사례가 있을 경우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p>어르신복지과, 정책기획담당관, 위탁사업이 있는 전 부서</p>
13	<p>○ 홍제천 유지관리예산 집행내역 분석 (의견서 p.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제천 유지관리용역비와 시설비는 시간이 갈수록 각종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매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하천시설물정비를 포함한 하상여과시설, 전기·기계분야시설 등 홍제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의 안전관리는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서울시로부터 위 용역비 예산이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부서와 업무담당부서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p>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토목과, 정책기획담당관</p>

□ 우수사례

연번	우수사례 의견	해당부서
1	<p>○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성과 (의견서 p.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전담부서(세무2과)를 별도로 지정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였고, 대형금융기관의 우수한 채권추심경력자 2명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자예금압류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여 분납을 유도하는 등 전문기법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금액(4,896백만원)면에서 2위, 징수율(14.9%)면에서 3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은 대단히 고무적임. - 앞으로도 해당부서(세무2과)는 위와 같이 차별화된 징수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세징수법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p>세무2과 등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p>

붙임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전문) 1부. 끝.